

문화비(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관련
질의 답변

Q&A

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

목 차

1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관련 Q&A	1
2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분야별 소득공제 Q&A	3
3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접수 관련 Q&A	12
4	카드사, 은행, 결제대행사 등 관련 Q&A	28
5	개인 근로소득자(구매자, 소비자) 관련 Q&A	31

1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관련 Q&A

Q01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이하 '문화비')의 소득공제 제도가 무엇인지?

- ⇒ 조세특례제한법('17.12.19., '18.12.24. 일부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사용한 문화비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됨. 도서·공연비는 '18.7.1.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19.7.1. 사용분부터 적용됨.
-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문화비는 공제율이 30%이고,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Q02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음.

Q03 어디서 구매하든지 관계없이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당연히 소득공제 적용을 받는 것인지?

- ⇒ 근로소득자가 온·오프라인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결제 체계 준비)을 갖추고 문화비 사용금액 자료 수집·확인이 가능한 사업자*로부터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매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 이하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와 국세청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갖추고 사용금액 자료 수집·제공이 가능한 사업자를 파악, 국민 및 국세청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자로 확정하고 이를 사업자 명단 등 현황 검색서비스 제공
- ⇒ 동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소득공제 적용 대상임. 따라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매(개인 간 거래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되지 않음.

- ⇒ 또한,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에서 증빙으로 첨부제출 가능한 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등*이 발급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로 정하고 있음.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기명식선불카드업자 포함), 전자금융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을 말함

- ⇒ 따라서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금액 확인 등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오프라인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 플랫폼 등)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자료가 수집(전송)되어 국세청, 신용카드업자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분야별 소득공제 Q&A

2-1. 도서 구매 소득공제 관련 Q&A

Q01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에서 말하는 도서의 기준은 무엇이며, 도서 구입 소득공제 관련 인정범위는 무엇인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소득공제 도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다만,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이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이 포함됨.
-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국내배송료 등은 도서구입비에 포함됨.
 - * ISBN :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1조에 의거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978-, 979-로 시작, 총 13자리로 구성되며 통상적으로 부가기호 5자리가 추가됨.
 - ** ECN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문체부 고시 2017-38호, '18.1.1일)에 의거 콘텐츠식별체계(UCI)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사)한국 전자출판협회에서 발급하는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Q02 종이책이 아닌 전자출판물을 구입하여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됨.

- 다만, 전자책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 ECN도 포함하여 인정됨.

Q03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월·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Q0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이 표기된 간행물 중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간행물이 있는지?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록사항이 표기된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반국가·반사회·반윤리적 내용)로 결정되어 고시된 간행물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Q05 중고책을 구입하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독서나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도서를 판매 사업자가 다시 판매하는 도서를 말함.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임.
- 하지만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의 거래는 소득공제 불가. 중고도서 판매자도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소득공제 제공 가능.

Q06 도서와 문구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도서 상품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도서와 문구를 결합한 상품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ISBN을 부착한 상품(일종의 세트/결합 도서상품)이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이나,

- 도서와 문구를 단순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도서에만 ISBN 발급)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Q07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 ☞ 문화비 소득공제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출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2-2. 공연 티켓 구매 소득공제 관련 Q&A

Q08 공연관람에 사용한 금액, 즉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의 기준은 무엇이며, 공연비 인정 범위는?

☞ 공연법 제2조 제1항에서 공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꼭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 위 공연법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등' 공연의 장르(분야)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녹화 영상(영화, 방송 등) 관람 행위는 공연에 포함되지 않음.
- ☞ 위와 같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티켓(관람권, 입장권 등)을 구입하며 지출한 금액을 공연관람 사용금액, 즉 공연비라 하며,
- 공연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 또는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공연비에 포함됨.

Q09 온라인 상 판매되는 공연티켓의 종류 중 공연티켓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이러한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 ☞ 동일한 공연의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의 하위 권종 형태로 판매되는 부가상품, 서비스를 포함한 공연티켓(예시: 공연+프로그램북, 공연+CD/DVD, 공연+음료 등)이 온라인 상에서 판매될 때, 아래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
- 상기 공연티켓이 동일한공연의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의 하위 권종(종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고,
- 부가상품, 서비스가 불포함된 공연 관람만을 위한 공연티켓 권종도 함께 존재한다면 공연관람이 주 목적이라 보이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됨
- ※ (예시) 000뮤지컬 공연의 공연티켓 내 여러 개의 공연티켓 권종* 판매 되는 경우, 부가상품인 프로그램북 제공이 포함된 공연티켓은 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에 포함
- * (공연티켓 권종) 요일별 공연티켓, 할인 공연티켓, R/S/A/B 등 좌석위차별 공연티켓, 특별 프로모션 공연티켓(당해 공연 프로그램북 제공 포함) 등
- 그러나, '호텔 숙박+공연 패키지'나 '지역관광+공연 패키지' 등의 복합상품처럼 구입비율 결제가 공연티켓 예매처 등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아닌 호텔이나 여행사 등에서 결제되는 경우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Q10 오프라인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기획사 등이 운영하는 매장 등에서 공연 프로그램북, 캐릭터 상품 등 MD상품을 구입하며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공연티켓과 별도로 판매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품에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Q11 공연장 등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해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공연장에서 연극, 뮤지컬, 오페라, 교향악 등 공연 녹화영상이나 실황 중계물을 관람하기 위해 공연티켓의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이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됨.
- ※ (예시) 국립극장 NT라이브, 예술의전당 싹은 스크린 등 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
- ☞ 그러나, 영화관에서 영화티켓의 형태로 판매, 발권하는 경우(예: 00시네마 신년음악회 실황 Live, 오페라 상영, 해외 페스티벌 등)는 티켓 및 이에 대한 결제, 매출 자체가 영화티켓 판매로 인식되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Q12 공연예술로 특화된 축제/행사(예: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등) 관람권,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공연에 특화된 전문 공연축제/행사이거나, 축제/행사가 공연이 주목적인 경우 또는 공연이 축제/행사의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임.

(요건)'공연명, 공연장소, 공연시간, 출연자(아티스트)' 등이 티켓 등에 표기되어 있고, 공연티켓 형태로 가격이 책정되어 유료 판매될 경우

※ (예시) 평창대관령음악제 기간 중 OOO 앙상블 공연, 통영국제음악제 △△△ 실내악 콘서트, 페퍼OO페스티벌, 인디음악축제 등

Q13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일반적인 축제/행사 티켓, 관람권 등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기존 티켓 예매처 웹사이트 등에서 주로 공연이 아닌 전시/행사 등의 메뉴(카테고리)에 등록되어 판매되는 티켓, 상품 등이 대부분이 위 경우에 해당하며,

- 상기 12번 질문답변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축제 입장권, 행사티켓을 구입하여 지출한 금액이라도 공연비로 볼 수 없어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 oo음식축제 입장권, oo꽃박람회 입장권, 초대권 등

Q14 온라인 중고티켓 증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증개 플랫폼, 사이트 등에서 중고티켓을 구입하며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개인 간 거래로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중고티켓 거래사이트 등에서 거래, 판매되는 중고티켓, 개인 간 거래되는 중고 공연티켓 등을 구입하며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는 중고 공연티켓의 경우, 판매 가격이 명확하지 않으며 책정된 가격이 과도하거나 가격이 비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판매가격을 알기 어려움을 고려한 것임.

- 특히,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가격을 책정한 중고 공연티켓 거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티켓 다량 구매 후 고액으로 되파는 행위 등 불공정한 거래가

혼재되어 있고, 여러 차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소득공제 적용 대상 공연비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동 법에 따라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사적으로 거래되는 공연티켓, 중고 공연티켓에 대해서는 국세청, 신용카드업자등에서 사용금액 확인 등이 불가능하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온오프라인 가맹점, 매장(시설),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도서와 공연티켓을 구매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의미

Q15 공연비 관련, 공연 단체 및 공연장별 유료회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료회원 가입비도 문화비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공연단체 및 공연장별로 운영하는 유료회원(후원회 등 포함) 가입비는 공연비에 포함되지 않음.

- 대부분의 공연 단체, 공연시설(공연장) 등에서는 각자의 특성과 여건 등에 맞는 다양한 회원제도를 운영하고 회원제의 회원등급/유형에 따라 다양한 혜택(연간 티켓 가격할인, 티켓 추가제공, 안내책자 발송, 회원 전용라운지 이용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 유료회원, 후원회비 등은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개인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이며, 유료회원 가입비가 여러 혜택 제공으로 인해 특정 공연관람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2-3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관련 Q&A

Q16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서 말하는 '박물관·미술관'이란 무엇인지? '입장료'의 인정 범위는?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 제2조에서 박물관·미술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실무적으로는 박미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미술관, 박미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으나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박물관·미술관으로 기 분류된 시설이 이에 해당함.
- 박미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박물관·미술관으로서 입장료 소득공제를 제공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은 소관 지자체를 통해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박물관·미술관으로 포함 요청해야 함.
- 참고로, 전시산업발전법(산업부 소관)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시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화랑', 동물원·수족관·식물원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입장료 적용 범위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을 의미하며,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비용(1일권) 인정.
- ※ 입장권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은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비용에 포함
- ☞ 좀 더 자세한 박물관·미술관 및 입장료의 범위는 매뉴얼 [참고2]에서 확인 바람.

Q17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에 지출한 금액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拂하는 비용을 의미함.
- 그러나 장기 교육강좌를 등록하여 청취하는 행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강사의 강의 수강이 목적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한편, 당일 입장에 유효한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과 분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인정 가능함.

Q18 박물관·미술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입점한 식음료장(카페, 음식점 등), 문화상품점,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 박물관·미술관의 식음료장(카페, 음식점 등), 문화상품점,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박물관 미술관 입장(전시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아니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Q19 온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 온라인 상 판매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류 중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예시 : 입장권+문화상품, 입장권+음료 등), 해당 부가상품·서비스 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인정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이 주 상품이라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임

Q20 온·오프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 입장권을 결합판매 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 박물관·미술관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 입장권이 결합 판매되는 상품은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외 타 시설에 대한 입장권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순수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보기 어려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 단, 박물관·미술관과 관광지를 분리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처리 가능

Q21 박물관·미술관이 다른 시설(수목원, 공원 등)의 내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외부 시설 입장권만 유료이고 박물관·미술관은 무료인 경우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박물관·미술관이 다른 시설(수목원, 공원 등)의 내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외부 시설 입장권만 유료이고 박물관·미술관은 무료인 경우,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은 순수한 박물관·미술관 입장을 위한 금액이 아니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Q22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2-2. [Q15]에서 설명된 공연계 현장과 달리,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이 100% 입장권 금액만 포함하는 경우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임. 그러나 입장권 외 식음료, 문화상품 등 기타 재화를 결제(멤버십 금액이 사용에 따라 차감되는 형태) 할 수 있는 멤버십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Q23

박물관·미술관에서 전시기획사를 통해 기획전시를 진행할 경우, 해당 전시 기획사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는 없는지?

☞ 만일 기획전시의 영수증 발행 명의자가 해당 박물관·미술관인 경우는, 해당 박물관·미술관 사업자만 등록하면 됨. 그러나 영수증 발행 명의자가 전시기획사일 경우, 해당 전시기획사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매뉴얼 사업자 유형 ① '오프라인 사업자'로 신청·접수)하여야 함. 그래야만 전시기획사가 활용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번호를 국세청에 전달하여 소득공제 처리가 될 수 있음.
- 전시기획사가 온라인 티켓 예매처 사이트를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위탁판매하는 경우는 3-1.[Q23] 확인
☞ 따라서 전시기획사를 활용하는 박물관·미술관은 반드시 사전에 전시기획사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해야 함.

Q24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 완료 이후,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사업자로 추가 등록 필요시 신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것인?

☞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 완료되어 있으며,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신규 등록 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콜센터(1688-0700) 또는 한국문화정보원에 통보하여 박물관·미술관 사업자로서 시스템에 추가 구분될 수 있도록 통보 조치 필요함.

3

문화비 대상 사업자 접수 관련 Q&A

3-1. 접수 전 준비사항

Q1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은 없음. 그러나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근로자의 문화 소비를 진작하여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열악한 도서, 공연 및 박물관·미술관 업계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간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음.

Q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에 맞추어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하는 것이 강제사항인지? 신청·접수하지 않으면 제재조치가 있는?

☞ 조세특례제한법('17.12.19., '18.12.24. 일부개정) 제126조의2 제2항은 근로소득자가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신청·접수하는 것이 강제사항은 아니며, 사업자로 신청·접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제재하지 않음.
- 다만,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자유업으로 온·오프라인에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현행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자료수집,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체계 하에서는 문화비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문화비 자료 수집·제출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사업자 유형별)를 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통해 확정된 사업자를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안내하여, 보다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Q3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www.culture.go.kr/deduction))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언제 해야 하는지?

☞ 문화비 전용 가맹점을 갖추고 사용금액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파악한 후 국민, 국세청 등에 제공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는 유형별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완료한 후, 연중 수시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 할 수 있음.

☞ 다만, ‘19년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신규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일(‘19.7.1.)에 앞서 사전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함.

※ (사전접수기간) ‘19.5.9(목) ~ 6.28(금), 사전접수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제도 시행일 기준 이후 신청 할 경우 제도시행일에서 신청일 사이 근로소득자의 결제분이 소득공제 누락이 될 수 있음.

Q4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www.culture.go.kr/deduction))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만 하면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되는 것인지?

☞ 각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 시 입력한 정보 및 증빙서류, 사업자 유형, 유형별 전용 가맹점 관련 기술적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없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확정하고 인증번호를 부여함.

- 한국문화정보원 신청·접수 전용 사이트를 통해 처리 단계(접수 완료/등록검토/신청 반려/등록완료)를 안내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확정되면 각 사업자에게 확정되었음을 알리고 있음(전자우편 발송)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인증번호는 확정 시 자동으로 부여되며, 확정일자는 등록이 완료된 일자임.

Q5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요건은?

☞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법인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하여, 국세청(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증(고유번호) 필요

☞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사업자 유형별로 정한 기술적 조치를 완료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하여 확정된 사업자를 의미함.

Q6 단일 사업자와 복합 사업자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 ‘단일사업자’는 도서 또는 공연티켓 또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만 판매하고, 이외 다른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사업자를 의미함.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존 가맹점번호(단말기)에서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매출만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됨.

☞ ‘복합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상인 도서 또는 공연티켓 또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타 재화를 같이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 가맹 분리를 완료해서 서점 또는 티켓 판매처의 단말기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도,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매출이 있다면 복합으로 신청해야 함.

※ (예시-도서) 도서와 잡지, 문구, 교구 등을 함께 판매하거나 교육비가 결제되는 경우
 ※ (예시-공연) 티켓과 MD상품, 프로그램북 등을 함께 판매하거나 매점이 있는 경우
 ※ (예시-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기념품 등을 함께 판매하거나 매점이 있는 경우

Q7 복합사업자이지만 예외적으로 단일사업자로 보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아래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복합사업자라 하더라도 단일사업자로 예외적 인정.

- 도서 판매 사업자는 연 매출 3억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중에서 도서 매출이 총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증빙자료 확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단일 사업자로 인정

-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 사업자는 연 매출액 7천 5백만 원 미만으로서, 증빙자료 확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을 통해 단일사업자로 인정

Q8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하기 전에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 ☞ 사업자의 온·오프라인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의 가맹점번호, 단말기 등에서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매출, 결제만 발생하도록 가맹 추가, 분리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완료해야 함
- 기술적 조치는 사업자 유형(온/오프라인 사업자, 단일/복합 사업자, 가맹점번호 보유 형태 등)에 따라 상이함. 사업자별로 필요한 기술적 조치는 '매뉴얼' 또는 아래 Q11~Q14를 참고

Q9 온라인 판매업자란?

- ☞ '온라인 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를 의미함. 온라인 판매업자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또는 이외의 재화를 결합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회원사(위탁자)와 위 재화 판매와 관련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를 대행
- ※ (예시) 티켓 예매처, 온라인 쇼핑물, 온라인·방송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물 등
- *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및 매출발생 명의 등이 온라인 판매업자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음.

Q10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및 입점 사업자인가?

-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의미함. 온라인상에 재화 등을 거래·판매할 수 있는 사이버몰(가상의 영업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른 판매자(입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사업자(재화를 직접 판매하지 않음)
- *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이 입점한 개별사업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음.
- '입점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외의자로서, 자신의 매장·쇼핑몰 등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타 판매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입점 사업자로 구분됨.
- ※ (예시) ○○홈쇼핑에서 홈쇼핑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만, ○마켓 사이트에 입점하여 재화를 판매하기도 함

Q11 오프라인 판매업자인 단일 사업자 및 복합 사업자가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는 무엇인지?

- ☞ 단일 사업자는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만 판매하고 기존 가맹점번호에서 문화비만 결제(매출 발생)하기 때문에 가맹점(신용카드사, 직불카드 등의 경우 은행)을 추가(분리)할 필요 없음.
- 다만, 매장(시설)이 본사 등과 동일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당해 매장(시설)의 결제 및 매출이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단말기)'에서 발생하도록 VAN사(카드사 등)에 관리를 요청해야 함.
- ☞ 복합 사업자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를 위한 가맹점(신용카드사, 직불카드 등의 경우 은행) 분리가 필수적임.
- 카드사 등에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매출만 발생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추가(분리) 신청해야 함.
- 또한, 사업자의 결제시스템 개편 및 오프라인 단말기 추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Q12 온라인 판매업자인 단일 사업자가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는 무엇인지?

- ☞ 단일 사업자는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만 판매하고 기존 가맹점번호에서 문화비만 결제(매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신용카드사, 직불카드 등의 경우 은행)을 추가(분리)할 필요 없음.
- 다만, PG사의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PG사가 카드사 등에 개설한 대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문화비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이 발행 처리될 수 있도록 PG사에 요청해야 함.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접수완료) 해야 함.
- 또한, PG사는 카드사 등에 별도 개설한 대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하위 사업자(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 사이트 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연계하는 조치를 해야 함.

Q13 온라인 판매업자인 복합 사업자가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는 무엇인지?

- ☞ 복합 사업자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를 위한 가맹점(신용카드사, 직불카드 등의 경우 은행) 추가(분리)가 필수적임. 가맹점번호 보유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 카드사 등의 직접 가맹점번호를 보유한 경우, 카드사 등에 '문화비 전용 소득공제 가맹점번호'를 추가 신청해야 함.
- PG사의 대표 또는 개별 카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PG사가 개설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결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자 신청·접수(접수완료)를 해야 함. 해당 PG사는 카드사 등에 PG사 대표 또는 개별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추가 분리하고, 하위 사업자들을 등록·연계하여 동 가맹점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PG사가 대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사용을 요청하는 하위 사업자를 등록연계할 때, 신청·접수(접수완료)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정보원 사이트에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위 사업자 모두 반드시 사업자의 판매 품목(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이외 재화) 등록 및 관리, 결제시스템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Q14 판매중개 플랫폼만 제공하는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도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하고, 가맹 분리 등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지?

☞ 단지 플랫폼만 제공하고 개별 입점 판매사업자들의 판매중개만 하는 온라인 판매중개 사업자도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야 함.

- 필요한 기술적 조치는 온라인 판매업자의 조치사항과 동일함. 조치사항 중 '판매 품목(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이외 재화) 등록 및 관리, 결제시스템 개편 등'을 '입점 사업자의 판매 품목 등록 및 관리, 결제시스템 개편 등'으로 보면 됨.

Q15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위해 현금영수증과 카드 등 가맹점번호를 각각 분리(추가)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만 분리(추가) 완료한 후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도 되는지?

☞ 현금영수증과 카드 등 가맹점을 모두 분리(추가) 완료하고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야 함.

Q16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이외 재화를 아주 소량 판매하는데도 가맹 분리를 해야 하는가?

☞ 각 문화 분야(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의 영세사업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Q7 참고)에는 예외적으로 가맹 분리 없이 등록 가능하지만, 영세사업자 조건 미충족 시 반드시 가맹분리해야 함.

- 비소득공제 품목을 현금으로만 판매할 시에도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해당 품목과 비 소득공제 물품의 현금영수증도 결제정보가 분리 전송되어야 함. 마찬가지로 기술적 조치 필요.

Q17 오프라인에서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이외 재화를 함께 판매하고 있는 복합사업자가 있다. 가맹분리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카드 단말기 없이 현금으로만 재화를 판매하던 경우에는 어떻게 결제를 분리하는가?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품목 결제 시에는 아래 내용 참고.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조회/발급 클릭 → 현금영수증 파트의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 클릭
→ 6개의 인터넷 발급 기관이 있는데, 현재 "엘지유플러스, KT, 금융결제원"에서만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 지원. 세 군데 중 한 곳을 선택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회원가입.
→ 매 결제 건마다 수기로 등록하되 '발행목적' 혹은 '지출구분'에서 꼭 '문화비 소득공제' 체크하기.

※ (예시) 금융결제원 카드밴 사이트(<https://www.kftcva.or.kr/>) 접속 → 현금영수증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문화비 소득공제 체크 후 현금영수증 발급

Q18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오픈마켓 등) 사이트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개별 입점 사업자(이하 '입점 사업자')도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하고, 가맹 분리를 해야 하는지? (온오프라인에서 입점사업자 자신이 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도 아니면서 오로지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만 활용하는 경우)

☞ 입점 사업자도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야 함.

- 사업자 신청·접수를 통해 더욱 정확한 문화비 결제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할 수 있음. 특히, 현금영수증은 실제 판매자(입점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입점 사업자가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야 현금영수증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함.
- 또한, 입점 사업자가 판매중개 플랫폼의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이용하여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이 아닌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입점 사업자에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사업자 책임소재 강화를 위해서도 입점 사업자의 신청·접수가 필요함.
- 다만, 입점 사업자는 전용 가맹점번호 추가분리 등 기술적 조치는 필요 없음.

Q19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가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판매중개 사이트(오픈마켓 등)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신청·접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직접 온라인 쇼핑몰이나 판매중개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타 판매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온라인 판매업자' 또는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에 해당되며, 이 유형에 따라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야 함.
- '온라인 판매업자' 또는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로 신청·접수한 경우, '입점 사업자 신청·접수 전용 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접수 할 필요 없음.

Q20 이미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그 외 상품을 별도의 가맹점번호로 결제하고 있는 복합 사업자의 경우에도 가맹점을 추가(분리)해야 하는지?

- ☞ 이미 카드사 등 가맹점번호를 분리하여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그 외의 상품을 분리결제하고 있는 경우, 가맹점 추가(분리)할 필요 없음.
- 다만, 온/오프라인 판매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의 경우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에서 기존 가맹점번호를 문화비 전용 가맹점 번호로 전환·관리해줘야 하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정 후 카드사, 은행, 결제대행사(PG사, 현금영수증 사업자 등) 등에게 알려줘야 함.

Q21 공연티켓 판매 없이 단지 대관만 하는 공연장 및 단체도 사업자 신청·접수가 필요한지?

- ☞ 온오프라인 상 공연티켓을 판매하지 않고, 단지 공연장 대관만 해주는 공연장, 공연시설 등 시설 운영자의 경우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할 필요 없음.
- 하지만 공연장, 공연시설 등을 대관하여 공연하는 공연단체, 공연기획사 등은 자신이 대관한 공연장·시설, 장소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공연티켓 판매행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만약 공연단체, 기획사 등이 온오프라인에서 공연티켓을 판매하고 있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해야 함.
- ※ (예시) ○○뮤지컬컴퍼니(자체 공연티켓 예매창구 또는 온라인 예매사이트 등에서 공연티켓 판매)는 사업자 유형별 기술적 조치를 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하여야 함

Q22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한 극장 중 대관도 하고 공연티켓도 판매하는 극장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해야 하는지?

- ☞ 극장 측이 온오프라인에서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공연장 운영자인 극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해야 함.

Q23 공연기획사, 공연단체, 박물관·미술관 전시기획사가 주요 온라인 티켓예매처 사이트를 통해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위탁판매하고 있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해야 하는지?

- ☞ 공연기획사, 공연단체, 박물관·미술관의 전시기획사 등이 자체 온오프라인 티켓창구 또는 예매사이트 등에서 직접 공연티켓,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고 오로지 타 티켓예매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면 공연기획사, 공연단체, 박물관·미술관 전시기획사 사업자의 현금영수증은 해당 사업자명으로 발행될 수 있기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매뉴얼 사업자 유형④ '입점사업자')로 신청·접수해야 함.
- 추가로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가령, 오픈마켓 등)에 입점하여 공연티켓,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다면 역시 매뉴얼 사업자 유형④ '입점사업자'로 신청·접수하여야 함

Q24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법인도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가 가능한지?

-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 법인**의 경우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 가능함.
- 동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에 따른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 '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정의)에 따른 '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을 의미함.
- 다만,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 전문예술단체 등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가 불가능함.

Q25

납품이나 위탁을 하는데도 신청해야 하는가?

☞ 타 사업자에게 납품만 하고 해당 사업자명으로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단, 납품받는 사업장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대상 품목의 결제 정보를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주체가 당 사업자인(영수증에 표기되는 사업자명이 당 사업자인)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해야 함.
-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판매하며, 영수증이 해당 사업자명으로 발급된다면 매뉴얼 사업자 유형④ '입점사업자'로 신청하면 됨.

Q26

오프라인 대형 쇼핑몰 안에 입점한 서점의 경우 어떻게 등록하는가?

☞ 이런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이 제공하는 단말기를 입점한 서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쇼핑몰의 주도로 먼저 가맹분리를 한 후 쇼핑몰(카드매출 소득공제용)과 서점(현금매출 소득공제용) 모두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해야 함.

- 쇼핑몰 제공 단말기(또는 포스기)로 결제되는 카드 결제정보와 서점 명의로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을 각각 소득공제 처리하기 위해서임.

- 쇼핑몰은 오프라인 사업자, 입점한 서점은 플랫폼 입점 사업자로 신청하면 됨. 이때 입점 서점은 신청 시 입점한 플랫폼에 '**쇼핑몰 입점(오프라인)' 으로 기록해줘야 함.

※ (예시) 롯데마트 ~점 입점(오프라인)

3-2. 접수 시 주요 문의 사항

Q27

사업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 공통적으로 필수 첨부 1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고, 필수 첨부 2에는 부가세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부가세 관련 서류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 만약 이 두 가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업자라면 "표준재무제표"로 대체. 부가세 관련 자료의 경우 신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필히 최근 1년 치 자료를 올려야 함.
- 복합 사업자의 경우 필수 첨부 1, 2는 위와 동일하게 첨부한 뒤, 온·오프라인 가맹 분리를 인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타 첨부에 제출해야 함.
- 신규 사업으로 인해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첫 부가세 신고 이전의 신규 사업자는 생략해도 무관함.

Q28

복합 사업자의 가맹분리 인증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 카드사나 결제대행사에서 사업자의 가맹 분리를 인증해줄 수 있는 자료이면 됨.

- 메일을 캡처하거나 공문 형식이 될 수도 있음. 사업자명, 문화비 소득공제용 가맹점번호, 비소득공제용 가맹점번호, 결제대행사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단,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Q29

오프라인 가맹점 번호엔 어떤 것을 기입해야 하는가?

☞ 문화비 소득공제용 가맹점 번호만 기입해야 함.

-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카드 가맹번호에서 일어난 매출에 한해서 소득공제 적용이 되기 때문임. 거래하고 있는 VAN사(카드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음.

Q30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영위하지만 카드 단말기가 없어 현금으로만 결제하거나, PG사/티켓 예매처등이 제공한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하면서 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시 어떻게 접수를 해야 하는지?

- ☞ 카드단말기가 없는 경우 : 현금 결제 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을 매 건 수기로 발행해야함.
- ☞ PG사가 제공한 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
 - ☞ 사업자 : '매뉴얼 사업자 유형 ② 온라인 판매업자'로 등록
 - ☞ PG사 : 해당 사업자가 사용하는 카드가맹번호를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
- ☞ 티켓예매처 등이 제공한 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 ☞ 사업자 : '매뉴얼 사업자 유형 ④ 입점사업자'로 등록
 - ☞ 티켓예매처 등 : 해당 사업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품목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되도록 전산 처리
 - ☞ PG사 : 티켓예매처에서 결제되는 카드가맹번호를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
- ☞ 단, 해당 PG사, 티켓예매처 등이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3-3. 접수·등록 이후 주요 문의 사항

Q31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되면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관리를 위해 카드사 및 은행, 결제대행사 등에 어떤 사항을 알려줘야 하는지?

-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입점 사업자 제외)는 카드사, 은행, 결제대행사(PG사, VAN사 등) 등에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오프라인의 경우 단말기 포함), 필요 시 확정일자를 알려줘야 함.

Q32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가 고의로 비소득공제 상품을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의 단말기 등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처벌 등 법령에 정한 제재가 있는지?

- ☞ 상기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5항에 따라 국세청의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 ☞ 조세범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을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할 수 있음.
 - 국세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온오프라인 사업자, 결제대행사 등과 협력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의 상품 판매, 결제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자 점검 등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후 전용 가맹점의 문화비 매출, 결제에 대한 오류 정정 등 시정이 필요한 경우 후속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별도 안내할 계획임.

Q33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만 판매·결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단말기 등에서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이 아닌 다른 재화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직접 판매하거나 대행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결제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함.
 - 판매 대행하고 있는 위탁사(회원사)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해당 상품 등록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함.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에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아닌 다른 재화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점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관리해야 함.
-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상품이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결제되는 것을 알게 된 즉시 사업자는 시정 조치해야 함.

Q34 사업자가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매한 개인(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소득공제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구매자별 구매 정보를 보관하다가 연말정산 시 한꺼번에 국세청에 제공(전송) 할 수 있는지?

-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직접 영수증을 보관하다가 국세청으로 전송하거나, 소득공제 관련 확인서나 영수증 등을 개인(근로소득자)에게 직접 발급할 권한이 없음.
 -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에서 증빙으로 첨부제출 가능한 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등이 발급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법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등의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법적 증빙효력을 지닌 서류 발급 주체는 국세청, 신용카드업자등*에 한정됨.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기명식신불카드업자 포함), 전자금융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을 말함

Q35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 사항이 있는지?

-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오프라인 매장(시설) 및 온라인 사이트 등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용 식별표식(사업자 확정 시 부여된 인증번호, 홍보 포스터, 온라인 배너 등)을 게시해야 함.
-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사업자 등록 시 입력한 주소나 전자우편주소로 식별표식(포스터, 온라인 배너 이미지, 스티커 등)을 발송할 예정임.
-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웹사이트 및 카테고리 개편사항 안내,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범위,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장바구니 분리·결제, 배송 등) 등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오프라인 사업자는 사업장(매장, 시설, 티켓창구 등)에 스티커 및 포스터 등을 게시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결제 단말기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온라인 판매업자 및 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사이트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용 배너 이미지를 게재하고, 상품(도서, 공연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게재할 때 각 상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등 업체 사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경우, 입점 사업자가 도서, 공연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상품을 등록할 때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는 절차·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입점 사업자가 소득공제 가능 상품임을 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Q36 소득공제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이며 소급 적용은 어떤 경우에 되는가?

-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완료 처리된 날부터 위 사업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에서 발생한 매출을 카드사 등에서 문화비로 확인, 처리 가능함.
- ☞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기존에도 도서, 공연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등 공제대상 품목만을 판매하고 있던 단일 사업자라면 국세청, 카드사 등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문화비 확인 등을 통해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위 사업자 가맹점**(매장, 시설 등)의 가맹점번호, 단말기 등에서 발생한 매출, 결제를 문화비로 처리 가능함.
- * 단,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19.7.1. 사용분부터 소급처리 가능.
- ** (단일 사업자) 신청·접수라는 절차를 통해 기존 단일 사업자 가맹점번호를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관리 가능하게 됨
- 그러나 '온라인 단일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결제, 매출이 발생한 날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자동적으로 소급적용 되지 않음. 이 경우 소급기간 중 결제되어 소득공제를 원하는 근로 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 첨부 후 적용 가능.
- ☞ 다만, 단일 사업자라 하더라도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 문화비 현금영수증 내역 등의 정보를 일반 국민(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신청·접수를 되도록 빨리 완료할 필요가 있음

Q37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고 신청한 후 신청 반려되었다가 후에 기술적 조치를 완료하였다면, 소득공제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 ☞ 원칙적으로 기술적 조치가 모두 완료된 뒤 한국문화정보원에 신청해야 함. 기술적 조치 이전에는 문화비 매출을 따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 조치 후 발생하는 매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됨.

Q38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등록 완료 후 입력한 정보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신청·접수 시 입력한 사업자 유형(단일, 복합) 및 가맹점정보(가맹점명, 가맹점번호), 그 외 기본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등) 등이 변경되었거나 폐업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함. 변경 방법은 1688-0700으로 문의.

4

카드사, 은행, 결제대행사 등 관련 Q&A

Q01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및 분리를 요청할 경우, 카드사, 은행(직불카드 등의 경우), 결제대행사(PG사, VAN사 등)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 ☞ 카드사, 은행, 결제대행사 등은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 사업자가 요청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추가 및 분리하여, 문화비 매출이 전용 가맹점번호에서만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에서 발생한 매출 정보가 카드사 등에 전송되어 문화비 소득공제 자료 수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며,
 - 추가 가맹점명, 번호 부여 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전용 가맹점번호 결제 전표(영수증)에 문화비 가맹점이라는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 결제 전표 내 위치 및 표시 내용 등 상세사항은 카드사 등과 결제대행사 간 결정
 - 오프라인 결제대행사(VAN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및 단말기 설치 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가 발급한 단말기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협조
- ☞ 아울러, 근로소득자에게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가맹점 추가 및 분리 등이 추진되는 만큼, 추가 가맹 처리 시 사업자의 기존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율과 동일 또는 이하 수준으로 적용 요청

Q02

PG사 등 결제대행사가 PG사 대표 가맹점번호를 가지고 있고, 이를 여러 온라인 판매업자 및 판매중개업자(하위몰)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 ☞ PG사가 PG사 대표 가맹점번호를 여러 온라인 사업자(하위몰)들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 카드사 등에 PG사 기존 대표 가맹점번호를 추가 분리 요청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확보해야 함.
 - 개별 온라인 사업자들이 '문화비 전용 가맹점번호' 사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 전용 가맹점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Q03 PG사 등 결제대행사가 PG사 대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온라인 판매업자 및 판매중개업자(하위몰)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PG사는 요청한 사업자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PG사의 대표 '문화비 전용 가맹점번호' 연계 등 기술적 조치를 위해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완료 했는지, 확정된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의 신청·접수 전용 사이트에 PG사가 관련 하위몰 사업자 등 검색,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

Q04 PG사는 온라인 결제대행을 하는 업자이고 직접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아닌데,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PG사의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 및 판매중개업자가 도서, 공연 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 결제할 경우, PG사명의 가맹점번호의 결제 정보가 카드사 등에 전송되기 때문에,
- 국세청, 카드사 등에서 정확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문화비 매출이 발생하는 전용 가맹점 및 가맹점번호, 전용 가맹점에서의 매출, 결제 금액 등 확인·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PG사도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해야 함.

Q05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을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제2019-23호) 제3조 제3항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발생한 문화비 현금결제 내역을 구분(문화비에 해당하는 경우 "C" 로 표시)하여 국세청에 전송해야 함.

Q06 A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되어 동 사업자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도서, 공연티켓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는데,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동 사업자 전용가맹점 현금영수증 정보 전송 시 문화비로 구분하지 않고 국세청으로 정보를 전송한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문화비(C)로 분류하여 전송한 거래에 대해서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관리됨.

- 다만, 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은 현금결제 내역, 문화비 구분내역,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 등을 대조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의 문화비 전용 가맹점에서의 문화비 현금결제 내역을 구분하여 전송하도록 주기적 안내할 계획임.

☞ 아울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3-3. Q36 참고] 예외적으로 단일 사업자에 한하여 국세청 등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문화비 확인 등을 통해 시행일자부터 연말까지 단일 사업자 가맹점(매장, 시설 등)에서 발생한 현금결제에 대해서는 문화비로 현금결제 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전송하지 않아도 문화비로 처리됨.

* (단일 사업자) 신청·접수라는 절차를 통해 기존 단일 사업자 가맹점번호를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관리 가능하게 됨

Q07 위와 반대로, B사업자는 확정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아닌데,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착오로 B사업자 현금결제 내역을 문화비로 구분하여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B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 현금결제만 발생시켰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 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은 현금결제 내역, 문화비 구분내역,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 등을 대조하여 위 질문과 같이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아닌 가맹점의 결제내역이 문화비로 구분되어 전송되어 올 경우, 국세청에서는 일반거래로 자료를 구축한 후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오류 코드로 안내할 예정임.

Q08 핸드폰 소액결제를 위해서 PG사에서 신청해야 할 사항은?

☞ PG사는 따로 신청할 사항이 없지만, 결제 정보를 전송할 때 반드시 문화비를 구분해서 전송해야 함.

5 개인 근로소득자(구매자, 소비자) 관련

Q01 일반국민들은 어디에서 어떤 사업자(서점,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조회할 수 있는가?

☞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http://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검색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콜센터(1688-0700)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음.

* 2019년 10월 이후 모바일 웹을 통해 손쉽게 조회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준비중임.

-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문화비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식별표식(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을 부착하여 일반국민들이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함.

Q02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자료가 수집(전송)되어 국세청, 신용카드업자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이를 위해 문화비 전용 가맹점을 갖추고 사용금액 자료를 수집·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파악하여 일반국민, 국세청 등에 관련 사업자 현황 및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음

- 결국,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의 온·오프라인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매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기존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공제율 15%)는 그대로 받을 수 있음.

Q03 소비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알리는 스티커 등 식별표식을 믿고 해당 사업자 매장, 시설 등에서 판매하는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매하였으나, 이후 알고 보니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아니어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위 해당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결제한 것이 아니어서 국세청, 신용카드업자등이 문화비로 확인할 수 없기에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어려움.

☞ 다만, 상기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제9조 과세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음.

Q04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매했는데 소득공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

☞ 소득공제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음.

-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도서나 티켓을 판매한 사업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 재화가 문화비 소득공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였는데도 소득공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아래 참고 바람.

-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등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문화비 사용금액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할 때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의 문화비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됨.
- *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용카드'란에 문화비사용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문화비사용분(총 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기재)'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하기 바람.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자료 구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문화비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국세청	4,700,000 ^{*1}					
기타				300,000 ^{*2}		

*1 : 5,000,000(신용카드 사용금액) - 300,000(구분되지 않은 문화비) = 4,700,000원
 *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구분되지 않은 문화비 지출 금액 = 300,000원

Q05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100만원을 구입했을 때 실제 환급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

☞ 근로자의 총급여와 공제현황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따라 환급 받을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환급세액만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움.

- 다만, 국세청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하여 환급세액 계산이 가능함.

* 홈택스(www.hometax.go.kr)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계산하기

Q06 간편 결제를 이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가?

☞ 간편 결제 서비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각 결제사별 문화비 소득공제 서비스 제공 여부도 전부 다름. 카카오페이(QR코드 결제는 제외), N페이 등의 주요 결제사에서는 소득공제 가능하지만, 문화정보원에서 모든 결제사의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사용하기 전에 해당 쇼핑몰 또는 간편 결제사에 문의하고 결제하는 것을 권장함.

Q07 핸드폰 소액결제로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19년 1월 1일부터 핸드폰(통신3사, 알뜰폰 포함) 소액결제분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에 포함.

Q08 신용카드 등과 마일리지(회원 포인트), 신용카드 등과 상품권 등의 여러 수단이 복합된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매, 결제 완료 후 카드사 등을 통해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금액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함.

☞ 상품권을 통해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용금액만큼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고객의 구매/결제 내역을 구분하여 카드사 등에 전송하거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

- 온라인 사이트 내에서 사용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등도 위와 동일함. 예를 들어, 고객이 10,000원짜리 도서를 구입하면서 2,000원을 포인트로 결제하고 8,000원을 현금 결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10,000원의 결제 정보가 국세청으로 전송될 수 있다면 10,000원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함. 하지만 2,000원 할인 후 8,000원에 대한 결제 정보만 전송된다면 8,000원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만 가능함.